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1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상혁・서영교

윤준병 · 염태영 · 서영석

박정현 · 정을호 · 황명선

김영호 · 천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(제40조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	<u><</u> 삭	제>			
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					
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					
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					
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					
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					
<u>다.</u>					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					
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					
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		
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					
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					
<u>할 수 있다.</u>					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					
무를 수행한다.					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					
및 발전을 위한 사항					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					
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					
<u>사항</u>					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					
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					
<u>한 사항</u>					

-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 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